

Rest Area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글 공주영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 수가 작은 사업장인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휴게시설



최소 바닥 면적이
6m² 이상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은 이동거리 내



흡연실이나 비품 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미인정





귀사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센터 기사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주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과 같은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면적: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 면적이 6㎡ 이상이어야 하며,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의 휴식주거나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휴게시설 설치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해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위치: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을 발산하거나 소음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휴게시설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매장의 경우라면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곳이라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 흡연실이나 비품 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시 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시 지켜야 할 사항

-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적절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